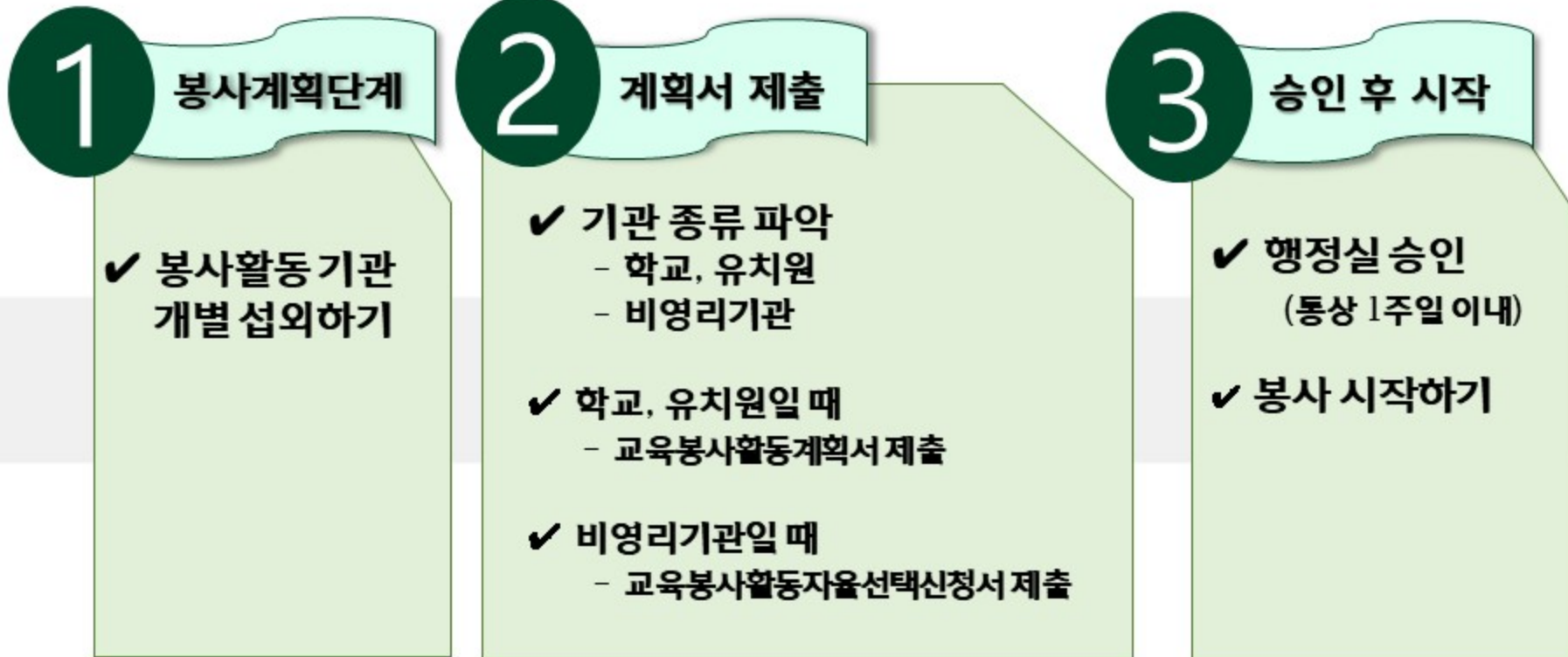


II. 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

1단계: 교육봉사활동(총 60시간) 실시 및 계획서 사전 제출



II

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

계획서의 종류(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)-매일 제출

[서식 1] 교육봉사활동 계획서

교육봉사활동 계획서										
교육봉사지 연적 사항	성명: _____ 학번: _____ 대학(명): _____ 학과(전공): _____ 휴대전화: _____ 이메일: _____									
교육봉사 활동기간	계관명: _____ 연락처: _____ 주소: <small>소재지 주소 기재여부</small> <small>현황주소 주소 기재여부</small>							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교 교육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행프로그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교육봉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학기제연계 교육봉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(유치원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외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제적 보상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					
교육봉사 예정장소	시간: _____ 1일 () 시간 / 총 () 시간 예정 내용: _____									
<p>주요사항</p> <p>기, 유소년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교육 목적의 순수 교육 활동을 인정한다. 36 교차 학생지도, 전교 및 지역, 학년, 학교 생활에 대한 연동형, 지속적인 향상 프로그램 지도, 중학교 방과후 교내 지도,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 등, 교내 지도, 유년기교육을 위해, 도서관 봉사 활동 등 교육과 직결적인 목적이 없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</p> <p>다, 교육봉사 시 하루 최대 4시간 인정하며, 이틀이내, 사시간 이내, 연일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시간만을 인정한다.</p> <p>전, 사별사, 유년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경우,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지도, 학기당지도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, 초·중·고등학교 방과후 공부방, 진로교육 지원은 인정한다. 그 이외의 활동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. 모든 교육봉사 활동은 인정하는 교육활동에 포함된다. 또한, 특정 교육봉사활동 목적을 보고 '사회봉사' 과목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.</p> <p>다, 봉사 기록으로부터 유익적 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.</p> <p>단, 유교, 종교, 특수활동 특수 목적을 지닌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, 종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연계 교육봉사 활동의 시행을 금지할 예정이다.</p> <p>특히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제출일: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: _____ (인)</p> <p><small>* 교육봉사 이수내역이 계획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음 경우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소할 수 없습니다.</small></p>										
허가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불허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사범대학</td> <td>학과장/지도교수</td> <td>(인)</td> </tr> <tr> <td>일반대학교/과장</td> <td>교직부장</td> <td>(인)</td> </tr> <tr> <td>교육대학원</td> <td>부원장</td> <td>(인)</td> </tr> </table>	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	(인)	일반대학교/과장	교직부장	(인)	교육대학원	부원장	(인)
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	(인)								
일반대학교/과장	교직부장	(인)								
교육대학원	부원장	(인)								

봉사기관이 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인 경우

➤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목록

- 『유아교육법』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
- 각종학교, 고등기술학교, 산업체 부설 중, 고등학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' 각종학교 ' 로 인가된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
- 타 법령에서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



II

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EW/HA,
THE FUTURE
WE CREATE



계획서의 종류(비영리기관: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인정 7곳)-행정실 방문, 등기 제출

1

① 61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(비영리기관에서 봉사할 경우)

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

수강 학계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	월	일
학과 (전공)	대학명		학과	전공		
이름			학번			
연락처	집 :	핸드폰 :	email :			
봉사 기관명	봉사 기관명	운영주체				
	대표자	성명	직책	주요사업		
	전화번호	Fax번호				
	주소	(우편번호 -)				
봉사 기관 소재지	*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의 교육봉사활동용 '활동지'와 '지도'를 담당자의 입안을 받으십시오.					
	기관 담당자 직책 :	성명 :		(인)		
봉사 활동 내용	*첨부자료 작성 및 준비*					
	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명 서류(예: 기관 신고장, 허가증 등) 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, 기관 소개, 부문 안내, 기관 공식 홈페이지 등)					
신청 사유	신청대상 여부					
	대상 ()	비대상 ()	성적결과	거 ()	부 ()	
신청 사유	사범대학		학교장/지도교수		(인)	
	일반대학 교직원		교직원		(인)	
신청사		교육대학원		부원장		(인)

접수 NO. 교육봉사활동 접수확인서

수강 학계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	월	일
학과 (전공)	대학명		학과	전공		
교육봉사 기관명	교육봉사 활동명		신청대상 / 비대상			

* 유의사항 : ① ※ 표시 부분은 수강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② 신청서 접수 시에 접수확인서를 꼭 받아가십시오.
③ 수강학계 '교육실습 I' 교과목 수강학기 또는 수강 예정 학기임.

2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

1. 교육봉사활동대상

교육봉사기관명	
교육봉사기간	년 월 일 - 년 월 일

2. 교육봉사활동내용

프로그램명	
프로그램 내용	
봉사활동 세부내용 (봉사자활동내용)	
봉사활동 요일/시간	

3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 인정 지침

가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은 <공공기관에 연정한 비영리기관>으로서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하며,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(승과)가 임원이거나 교육봉사자의 학습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.

나.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'교육봉사'에 적합한 것인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 담당자(사범대-학교장 또는 지도교수 / 일반대학 교직원 - 교직원 / 교육대학원 -부원장)에게 제출합니다. 해당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
-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명 서류
- 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, 기관 소개, 부문 안내 또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)

다. 심의 결과가 '승인'이면 본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, '반려'이면 다른 적격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.



비영리기관 봉사 가능 기관 목록

-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
- 이대복지어린이집
- 북아현 방과후교실 어린이집
- 서대문구 건강가정·다문화 가족지원센터
- 충현 방과후교실
- 마포구 고용복지 지원센터
- 성산 종합사회복지관

